

의안번호	제356호
의결 연월일	2012년 6월 일 (제311회)

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

발의자	김봉희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2년 6월 일

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

(김봉회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5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6월 일

발 의 자 : 김봉회·정 현·김종필·김희수·
박문희·윤성욱·황규철의원(7명)

1. 제안 이유

-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로컬푸드정책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설치(안 제3조)
- 나.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(안 제4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2012.6.1 ~ 2012.6.10

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우수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전개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우수농식품”이란 친환경농산물인증, GAP인증, 전통식품품질인증, 유기농식품인증, 도지사품질인증 등을 통해 생산되어 도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농축산물과 식품을 말한다.
2. “로컬푸드정책”이란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농촌주민들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수농식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로컬푸드정책협의회의 설치) ① 도지사는 로컬푸드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로컬푸드정책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로컬푸드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2. 로컬푸드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
3. 그 밖에 로컬푸드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협의회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협의회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도 농정국장,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국장, 농협중앙회충북지역본부 부분부장이 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충청북도의회의 의원
2. 생산자단체·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
3.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
4. 그 밖에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

④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원예유통식품과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한다.

제8조(수당 등)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의 위촉 해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
2. 위원이 사망,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

기 어려운 경우

3.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- 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·소비자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,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,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,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은 농어업·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·공급하고,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, 농어업경영의 효율화,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·공급하고, 식품산업 및 농어업·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소비자는 농어업·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